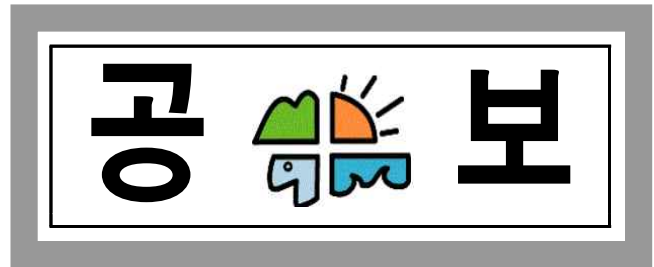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1453호 2023년 3월 23일(목)

입법예고

-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

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 법 예 고

「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3월 23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「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규칙안

2. 개정이유

가. 「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」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개전형에 합격한 단원의 등록서류를 규정함으로써 풍물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신규 채용모집에 합격한 단원의 경우 등록서류 명시(안 제5조에 제4항 신설)
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
- 채용신체검사서 1부.(병원에서 공무원 채용 용도로 발급)
- 주민등록 초본 1부.
- 주민등록 등본 1부.

4. 자치법칙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. 4. 12.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 : 속초시립박물관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
나.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

- 주 소 : 우)24826 강원도 속초시 신흥2길 16
속초시립박물관 학예팀
- 연락처 : 전화(033-639-2976), 팩스(033-639-2430),
이메일(hkt71@korea.kr)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이메일, 직접 방문 등

6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립박물관 학예팀(033-639-297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7.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뒷장붙임

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합격자의 경우 단원의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.
2. 채용신체검사서 1부.(병원에서 공무원 채용 용도로 발급)
3. 주민등록 초본 1부.
4. 주민등록 등본 1부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전형방법 및 채점기준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5조(전형방법 및 채점기준)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합격자의 경우 단원의 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. 1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. 2. 채용신체검사서 1부.(병원에서 공무원 채용 용도로 발급) 3. 주민등록 초본 1부. 4. 주민등록 등본 1부.